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3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8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14일, 김영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복지위원회위원 김영한)

- 상위법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〈조항별 신·구 대비표〉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3조 중	별도의	따로
제5조 제5항 중	해촉	위촉해제
제5조 제5항 제1호 중	해촉을	위촉해제를
제7조 제3항 중	경과되지	지나지
제10조 제1항 중	감안	고려
제10조 제3항	출·퇴근하는	출근·퇴근하는
제11조 중	신·증축할	신축·증축할
제13조 제2항 중	부여할	줄
제14조 제5호 중	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	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우선, 안 제14조 제5호의 내용 중 “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 을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변경하는 것은, 지난 2014년 1월 14일 시행된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,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음으로, 그 밖에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,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별도의” 를 “따로” 로 한다.

제5조 제5항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해제” 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“해촉을” 을 “위촉해제를” 로 한다.

제7조 제3항 중 “경과되지” 를 “지나지” 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중 “감안” 을 “고려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·퇴근하는” 을 “출근·퇴근하는” 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신·증축할” 을 “신축·증축할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부여할” 을 “줄” 로 한다.

제14조 제5호 중 “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 을 “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<u>별도의</u>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----- ----- ----- <u>따로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5조(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본인이 <u>해촉</u>을 원하는 경우</p>	<p>5조(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촉해제</u> -----.</p> <p>1. -- <u>위촉해제</u>를 -----</p>
<p>제7조(위원의 의무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<u>경과되지</u>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의무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나지</u>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</p> <p>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<u>감안</u>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<u>출·퇴근</u>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</p>	<p>제10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</p> <p>① ----- ----- <u>고려</u>하여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출근·퇴근</u>하는 ----- -----</p>

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역세권"이란 「철도건설법」,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라 건설·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.

제11조(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·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제13조(민·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,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~ 4. (생략)

5. 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의 부대·복리시설에 관한 사항

-----.

제11조(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 -----
신축·증축할 -----

-----.

제13조(민·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줄 -----
-----.

제1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) -----

-----.

1.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-----
